

의안번호	2213140
의 퇴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7.
추계번호	25B5248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원 (연평균 1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 (안 제76조의2)	160	160	160	160	160	800	16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의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의2(지능형 교통체계 실태조사) 신설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1.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2.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3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연구·개발 및 표준화 동향에 관한 사항 4.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및 해외진출 현황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82조(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, 연동성 및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(이하 “지능형교통체계표준”이라 한다)을 제정·고시할 수 있음. 다만,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1항)	재량·의무 규정
3	안 제88조(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)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(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. 이하 제7항에서 같다)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며, <u>교통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5항)</u>	의무규정
		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소관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, 해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(제6항 신설)	재량규정
4	제89조(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)	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</u>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
1	안 제76조의2(지능형교통 체계 실태조사) 신설	○	•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								
2	안 제82조(지능형교통체계 의 표준화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·고시하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제정 목적에 ‘지능형교통체계의 품질 확보’를 추가할 경우, 지능형교통체계의 품질 확보 관련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·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한 표준의 세부 범위, 적용대상, 평가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–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</th><th>'26(안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표준성능 평가)</td><td> 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인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계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</td><td>600</td><td>6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자료: 국토교통부	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표준성능 평가)	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인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계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	600	600
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							
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표준성능 평가)	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인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계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	600	600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88조(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교통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,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, 해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교통정보의 품질보장 시책의 내용 및 규모·사업방식,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별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규모, 전문인력 보유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4	안 제89조(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개발·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지정 전담기관의 수,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」(이연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3141호)¹⁾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사업 현황 파악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‘관련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’과 ‘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용역’을 단일한 연구용역으로 실시할 수 있음
 - 따라서,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계법률안인 「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41호)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단일한 연구용역(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용역)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「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」 제7조(통계작성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(안 제76조의2)

- 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(「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」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포함)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실태조사 실시주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

(단위: 백만원)

유사사례명	사업내용	예산('25)
2025년 기계설비산업 통계조사 및 특수분류체계 도입 연구	「기계설비법」 ²⁾ 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(매년 실시)	151
2025년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	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³⁾ 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(매년 실시)	160

자료: 국토교통부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원(연평균 1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	160	160	160	160	160	800	16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의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) 「기계설비법」 제6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3)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6조(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·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,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,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(이하 “소프트웨어산업정보”라 한다)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지능형교통체계(ITS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 개요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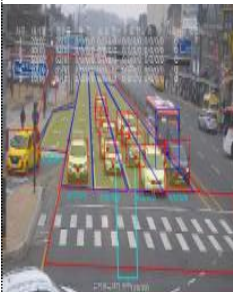
□ 정의

- 도로, 철도, 항공, 해운 등 교통수단과 관련한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통 안전성,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체계

□ 주요기능

- 자동차·도로뿐 아니라 철도, 항공, 해상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전반의 넓은 범위 내에서 교통 인프라·차량·통신·플랫폼이 융합된 정보기반 교통관리체계로,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, 사고를 예방하며, 친환경 운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
- 특히, 자동차·도로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차량검지기(VDS), 폐쇄회로카메라(CCTV), 도로전광표지판(VMS), 차종분류장치(DSRC) 등 다양한 ITS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, 수집된 정보는 ITS 교통관리정보센터에서 전국단위 실시간 교통정보로 연계·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.
- 또한, 버스정보안내기(BIT)를 활용한 대중교통정보 제공, 하이패스(Hi-Pass)를 통한 전자지불서비스 등 다양한 ITS 서비스가 도입·운영되며, 국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 교통운영에 기여하고 있음

< 자동차·도로교통 분야 ITS 주요 서비스 >

				
<AI 신호제어>	<자동요금징수 (다차로하이패스)>	<버스정보안내 단말기(BIT)>	<수요대응버스>	<국가교통정보센터 모니터링>

□ 구축현황

- ① 고속국도 :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(FTMS*), 터널교통관리시스템(TTMS**) 등 ITS 시설물 5,224km(44개 노선) 및 터널 594개소(29개 노선) 운영 중('24년)

*FTMS : 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

**TTMS : Tunnel Traffic Management System

***고속도로 총 연장 : 5,224km('24년)

- ② 일반국도 : 일반국도 13,983km ITS 운영 중('24년)

- ③ 도시부도로 : 상대적으로 ITS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 확대를 위해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중('09~)